

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규정

제정 2006. 2. 17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단(이하“협력단”이라 한다) 정관 제4조, 제34조에 의거 산학협력 체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강원관광대학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과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협약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3조 (협약명칭) 본교와 산업체 등이 체결하는 협약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본교와 산업체간 또는 기타 기관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“산학협력협약”이라 한다.
- ② 본교와 연구소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“연학협력협약”이라 한다.
- ③ 본교와 관공서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“관학협력협약”이라 한다.

제2장 산학협력위원회

제4조 (산학협력위원회) ① 우리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우리대학 교수 중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심의 및 의결사항)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대학 및 계열 또는 학과와 체결할 산학협력 체결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에 따른 교육과정 자문의 관한 사항
4.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
제6조 (소집 및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의결사항 보고)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
제3장 산학협력체결시 업무방법

제8조 (업무방법) ① 각 학과(교수)에서는 산학협력체결시 협력단에 별지 제1,2,3호 서식에 의거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협력단은 산학협력체결 요청시 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재가를 받아 이를 시행한다.

제9조(유의사항) ① 협력단의 산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협약 체결은 무효로 한다.

부 칙

① 본 규정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